

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

제정	1996. 2. 21	규칙 제 646호
개정	1996. 6. 25	규칙 제 656호(직제규칙)
	1996. 9. 24	규칙 제 663호(직제규칙)
	1998. 9. 23	규칙 제 722호(직제규칙)
	1998. 12. 30	규칙 제 732호
	2000. 6. 20	규칙 제 767호
	2003. 12. 23	규칙 제 828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4. 6. 25	규칙 제 834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5. 7. 27	규칙 제 85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	2006. 12. 15	규칙 제 887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	2007. 3. 28	규칙 제 901호
	2008. 6. 16	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	2009. 5. 29	규칙 제 963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0. 12. 15	규칙 제 99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2. 2. 20	규칙 제1027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4. 8. 14	규칙 제108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6. 11. 30	규칙 제1142호
일부개정	2018. 7. 31	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	2018. 9. 4	규칙 제119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9. 12. 20	규칙 제122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23. 10. 10	규칙 제1288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0. 6. 20, 2007. 3. 28, 2008. 6. 16>

제2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0. 6. 20, 2007. 3. 28>

1.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
2.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. 다만,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.
3.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,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
4. 시장이 제정·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
5. 예산안·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

제3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의장·부의장 각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·단장, 보건소장 및 4급 이상의 사업소장이 된다. <개정 98. 9. 23, 2003. 12. 23, 2005. 7. 27, 2006. 12. 15, 2009. 5. 29, 2010. 12. 15, 2014. 8. 14, 2016. 11. 30>

③ 제2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·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5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 <신설 2007. 3. 28>

제4조(의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)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「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의 직제순위에 의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98. 9. 23, 2003. 12. 23, 2007. 3. 28, 2008. 6. 16>

제5조(배석 및 출석발언자) ① 예산법무과장과 홍보기획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. <개정 96. 6. 25, 98. 9. 23, 2003. 12. 23, 2004. 6. 25, 2005. 7. 27, 2010. 12. 15, 2018. 9. 4, 2019. 12. 20, 2023. 10. 10>

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 및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심의회 구성원 외의 배석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
제6조(회의소집)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의안제출) ① 의장·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.

② 사업소 소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인 관련 국장이 이를 제출한다. 다만, 보건소·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는 소장이 제출

한다. <개정 2003. 12. 23, 2005. 7. 27, 2006. 12. 15, 2010. 12. 15, 2014. 8. 14, 2023. 10. 10>

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국 및 보건소·평생학습사업본부에 관련된 의안은 미리 관련 해당부서 간에 합의를 거쳐 의안의 주무 국장 또는 소장이 제출한다. 다만,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12. 23, 2005. 7. 27, 2006. 12. 15, 2010. 12. 15, 2014. 8. 14, 2023. 10. 10>

④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안표지와 함께 15부를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의안을 제출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안대장에 기재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안목록과 함께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0. 6. 20]

제8조 및 제9조 삭제 <2000. 6. 20>

제10조(심의의결) ①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하며, 안건의 내용뿐 아니라 제·개정취지,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의안은 제안설명, 찬반토의,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의안은 원안가결, 수정의결, 부결,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.

제11조(회의정족수 및 대리출석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장 및 소장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. <개정 98. 9. 23, 2003. 12. 23>

③ 심의회에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
제12조(심의결과의 처리)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·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03. 12. 23, 2004. 6. 25, 2007. 3. 28, 2019. 12. 20>

1.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규칙안은 해당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.
2.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한다.

② 삭제 <2000. 6. 20>

③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, 이러한 의안의 심의회 재상정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13조(간사 및 서기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. <개정 2010. 12. 15>

② 간사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매 회의 시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0. 6. 20]

제14조(의안심의의결서) 심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 후 (별지 제6호 서식)의 의안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 6. 16, 2012. 2. 20, 2018. 7. 31>

[본조신설 2007. 3. 28]

제16조(운영세칙)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5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6. 9. 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1998. 12. 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6. 2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2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5. 7. 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6. 12. 15 규칙 제887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광명시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·제7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 중 “평생학습사업소”를 “지식정보사업소”로 한다.

④ 내지 ⑧ 생략

부칙 <2007. 3. 28 규칙 제90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5. 29 규칙 제963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제3조제2항 단서 중 “지식정보사업소”를 “지식정보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규칙 제9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식정보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”를 “평생학습사업소 및 맑은물사업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보담당관”을 “홍보실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과 제3항 중 “지식정보사업소”를 “평생학습사업소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법제업무담당”을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④④ 까지 생략

부칙 <2012. 2. 20 규칙 제1027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「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③ 부터 ⑤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8. 14 규칙 제108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

⑬ 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평생학습사업소 및 맑은물사업소”를 “평생교육사업소 및 환경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평생학습사업소장”을 각각 “평생교육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⑭ 부터 ⑯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11. 30 규칙 제114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9. 4 규칙 제11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홍보실장”을 “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⑧ 부터 ⑰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12. 20 규칙 제122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법무과장”으로, “홍보과장”을 “홍보담당

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조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법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23. 10. 10 규칙 제1288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
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
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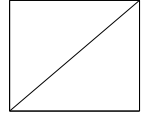
② 광명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홍보담당관”을 “홍보기획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평생교육사업소”를 “평생학습사업본부”로
한다.

③ 부터 ⑥ 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00. 6. 20>



의안 번호	제 호
의결(보고) 년 월 일	. . . (제 호)

○ ○ ○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제 출 자	○○○국장 ○○○
제출연월일	. . .

[별지 제2호 서식]

의안대장

의안 번호	제출 연월일	제출 부서	의안 종별	의안명	조례·규칙심의회	
					상정연월일	심의결과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00. 6. 20>

제○회 조례·규칙심의회 의안목록

※ 총 6 건

- 조 례 안 : 1 건
- 규 칙 안 : 2 건
- 기 타 안 건 : 3 건

. . . 00:00

순번	의안번호	제출부서	건 명	비 고
			[조례안]: 1 건	
1			○○○○조례중개정조례안	
			[규칙안]: 2 건	
2			○○○○규칙제정안	
3			○○○○규칙중개정규칙안	
			[기타안건]: 3 건	
4			○○○○	
5			○○○○	
6			○○○○	

[작성요령]

- ① 간사가 의안을 접수한 순서대로 등재 후 의안번호 부여
- ② 의안목록 기재순서는 조례안, 규칙안, 기타안건순으로 등재하고, 등재순서에 의하여 심의
- ③ 등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직체순으로 등재하고 심의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00. 6. 20>

○○○ 안 검토의견서

의 안 명			
소관부서		담당자 성명	
검 토 사 항			
<p>1. 조례·규칙 또는 훈령·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:</p> <p>2. 관계법령 또는 도자치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:</p> <p>3.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:</p> <p>4. 입안형식의 적정여부:</p> <p>5. 시행상의 문제점:</p> <p>6. 기 타:</p>			
검토결과			
검 토 자	직	성명	(인)

[별지 제5호 서식] [제 1 면]

제 ○ 회 조례 · 규칙심의회 회의록

다음과 같이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제 ○ 회 조례 · 규칙심의회가 개최 되었습니다.

일 시	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00:00~00:00
장 소	○ ○ ○ ○ ○ ○
의 장	○ ○ ○

[제 2 면]

제 ○ 회 조례·규칙심의회 회의록

[일 반 사 항]

일 시: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(○), 00:00 ~ 00:00

장 소: ○ ○ ○ ○

출 석: ○ 명

위 원 ○ ○ ○

위 원 ○ ○ ○

위 원 ○ ○ ○

결 석: ○ 명

위 원 ○ ○ ○

위 원 ○ ○ ○

위 원 ○ ○ ○

대리출석: 직 성명 ○ ○ ○ 직 성명 ○ ○ ○

배 석: 직 성명 ○ ○ ○ 직 성명 ○ ○ ○

간 사: 직 성명 ○ ○ ○

[제 3 면] <개정 2003. 12. 23>

(의 결 사 항)

(조 례 안)

1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2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3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
(규 칙 안)

1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2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3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
(기타안건)

1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2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3. (의안 제○○호, ○○○국)

[제 4 면]

(발 언 내 용)

1. ○○○조례안

심의회위원 ○○○ :

심의회위원 ○○○ :

심의회위원 ○○○ :

2. ○○○규칙안

심의회위원 ○○○ :

심의회위원 ○○○ :

심의회위원 ○○○ :

[제 5 면] <개정 2003. 12. 23>

출 석 상 황				
구 분	직 책	성 명	참 석 여 부	비 고
의 장				
부 의 장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출 석 : ○ ○ 명 결 석 : ○ ○ 명				

[별지 제6호 서식] <개정 2000. 6. 20>

의 안 심 의 의 결 서

년 월 일

의 안 번호	의 안 명	심의결과		비 고
		가	부	

심의위원

서명